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67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9.

발 의 자 : 김상욱 · 이해식 · 최혁진
권칠승 · 박정현 · 양부남
이학영 · 정준호 · 황운하
허성무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판, 검찰,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 현장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상처나 골절 등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도 공무원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. 또한, 이 조항은 유기징역과 자격정지의 병과만을 유일한 형벌로 규정하고 있어,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은 당연퇴직을 피하기가 어려움. 이러한 독직폭행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위축되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게 되는 등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제한이 따를 수 있음. 따라서 사안이 경미한 독직폭행의 경우 당연퇴직이 배제되는 벌금형도 가

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인신구속과 관련된 직무 수행 중에 형사피의자 등에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, 필요적으로 병과하던 자격정지를 선택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 125조).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”를 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5조(폭행, 가혹행위) 재판, 검찰,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<u>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</u> 에 처한다.	제125조(폭행, 가혹행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-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-----.</u>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<u>10년 이하의 자격정지</u> 를 병과할 수 있다.